

# 21世紀를 向한 法制發展方向

李 世 薰\*

◇ 차 례 ◇

## I. 머리말

## II. 時代狀況과 韓國法制의 現況

1. 民主法治國家의 基盤造成
2. 南北關係의 진전과 統一與件의 성숙
3. 新國際秩序와 韓國位相의 變化
4. 情報化社會에로의 進入을 위한 基盤擴充
5. 產業社會의 高度化를 위한 制度改善

## III. 21世紀를 향한 韓國法制의 座標

1. 民主法治國家 完成을 위한 法制機能 強化
2. 民族同質性 確保를 위한 統一法制 마련
3.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法制整備
4. 情報化社會의 定着을 위한 法制改善
5. 高度產業社會를 先導할 法制改革

## IV. 맺음 말

## I. 머리말

21世紀는 「눈앞의 未來」로 우리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에게는 21世紀를 단순히 시대흐름의 연결선상에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직한 未來」를 개발하며 가꾸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진취적이었고 미래지향적이었다. 21世紀를 맞이한 우리사회도 이와 같은 「발전」의 대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각계 각분야에서 21世紀 우리사회에 대한 조명과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문적 대비로서 未來

\*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學이라는 새로운 양르가 정립되고 있고 더 나아가 國家的 次元의 본격적인 未來研究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21世紀라는 未來空間의 構圖마련은 어느 한 분야의 진단과 예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政治·經濟·社會·文化·科學技術 등 어느 한 부문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法制部分의 21世紀 構圖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떠한 의미에서 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조직과 활동의 준칙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法制部門이야말로 21世紀에 대비한 가장 기본적이며 변화의 완성을 결정짓는 척도일 수 있다. 그간 부단히 거듭되어온 인류문명발달의 결실이 농축되어 표현될 21世紀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할 未來像을 설계하여 이를 制度化거나 그 軌道修正을 방지하여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法制度라는 장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1世紀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사회에서의 法制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시간과 공간적 차원의 복합적인 研究와 分析의 態度가 요구된다. 法制의 側面에서 미래를 예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적 상황에 그 시발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1世紀 대비가 國家的 次元을 넘어 世界的 次元의 인류의 당면과제로 설정된다 할지라도 韓國的 狀況이라는 배경을 저버릴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21世紀를 향한 법제발전방향을 구상함에 있어 먼저 時代狀況과 韓國 法制의 現況을 개관하고 그에 따른 21世紀 한국법제의 좌표(民主法治國家의 完成을 위한 法制機能強化, 民族同質性 確保를 위한 統一法制의 마련,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法制整備, 情報化社會의 定着을 위한 法制改善, 高度 產業社會를 先導할 法制改革)를 설정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法制政策課題와 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21世紀를 향한 한국법제의 발전방향에 正論的인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향과 다른 제안이 있다면 앞으로의 研究·檢討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受容·開發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 II. 時代狀況과 韓國法制의 現況

21世紀의 법제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상황과 韓國 法制의 現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時代狀況과 한국법제의 현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民主法治國家의 基盤造成」, 「南北關係의 진전과 統一與件의 성숙」, 「新國際秩序와 韓國位相의 變化」, 「情報化社會에로의 진입을 위한 基盤擴充」, 「產業社會의 高度化」라고 하는 다섯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1. 民主法治國家의 基盤造成

오늘의 시대상황과 한국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첫째 특징으로 民主法治國家基盤의 造成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6·29 民主化宣言」 이후 民主化의 制度의 指標라 할 수 있는 基本的 人權 伸張을 위한 憲法의 規範力 強化, 그리고 地方自治制의 본격적 실시를 위한 제반 法制整備 등을 통하여, 民主法治主義의 정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法治主義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21世紀의 한국사회를 대비한 원대한 준비를 하는 경우에 民主法治主義의 완성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상적으로는 民主法治國家에서 法制가 國家政策에 대한 國民的 信賴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日帝立法의 담습, 外國法制의 무분별한 수용, 각 部處 및 각 利益集團의 利害關係에 따른 입법의 산재 등으로 인해서, 사회전반적으로 法의 規範力이 약화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民主法治國家의 完成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南北關係變化 · 新國際秩序形成 · 情報化社會 및 高度產業社會에로의 進入 등 時代狀況의 變化에 相應하는 法制의 탄력적 대응의 未備로 國民 法感情 또는 法生活과 法制度가 괴리되어 있다는 점 또한 民主法治國家의 完成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는 法令, 중복규제 및 절차 번잡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 위주의 法令 등도 민주법치국가의 완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韓國 法制를 總體的으로 진단하여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法令間의 衡平性 및 法令에 대한 國民的 信賴를 회복하고, 21世紀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법제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의 총체적 정비를 담당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기구의 위상이 취약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2. 南北關係의 진전과 統一與件의 성숙

民主法治國家의 基盤造成 다음으로 우리 시대상황의 두번째 특징으로는 南北關係의 진전과 統一與件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南北對峙狀況 하에서는 적극적인 統一政策의 추진과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제 6 공화국의 시의적절한 北方政策推進과 「7·7特別宣言」(南北한 善意의 競爭者로의 轉換을 위한 政治的宣言)으로 통일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南北交流·協力의 活性化로 인한 다양한 統一政策의 開發과 法制次元의 政策支援의 必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현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關聯法制의 整備 및 支援이 요구되지만, 유관기관의 法令情報交換 및 協助體制의 미흡, 北韓法制에 대한 研究事業의 미진, 北韓의 情報未公開 등으로 인하여 效率的인 法制次元의 支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21世紀 民族大和合次元의 새로운 統一文化를 창조하기 위하여는 統一政策支援을 위한 法制整備 및 統一法制 마련에 보다 더 진력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 3. 新國際秩序와 韓國位相의 變化

民主法治國家의 基盤造成 그리고 南北韓 統一與件의 成熟과 함께, 우리 시대상황의 세번째 특징으로는 新國際秩序에 따른 韓國位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국제질서는, 이미 일반인론매체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蘇聯邦 및 東歐圈의 崩壞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에 의해서 열리는 탈이데올로기의 국제질서로 특징지워진다. 탈이데올로기적인 國際秩序의 새로운 편성 과정에서 지난날의 東西冷戰時代에 무시되어 왔던 少數民族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이른바 新民族主義가 등장하게 된다.

탈이데올로기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軍事力이 아니라 經濟力에 의하여 새로운 均衡이 형성될 것이고, 이와 같이 經濟力を 바탕으로 한 새로운 國際秩序 하에서는, “貿易 및 關稅에 관한 一般協定(GATT)”의 우루파이 협상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적 강대국은 기존의 理念의 親疎關係를 떠나서 경제적 약소국에 대하여 무차별공격을 가하여 경제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가속화되고 있는 單一域內市場의 形成(또는 EC統合)과 최근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체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國際經濟關係는 경제블록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國際秩序하에서 韓國의 位相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국내기업에 의한 海外投資와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國際通貨基金(IMF) 등의 국제기구에의 출자도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위상 제고와 아울러서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位相이 높아지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종전처럼 막후교섭에 의해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UN 등의 國際機構에서 法的인 節次에 따라 국제법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法的戰略의 수립과 신속한 法的對應을 해야 할 것이고, 한국의 國際化에 수반되는 각종 國際條約의 체결 및 가입을 위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분석·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국제조약에의 가입에 따라서 관련된 國內法制의 再整備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무대에서의 적절한 법적 대응과 국내법 정비를 위해서, 각종 외국법령과 국제조약 그리고 유럽공동체(EC)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의 움직임과 국제사법기구의 판결 등에 관한 신속한 情報提供 및 情報分析 체계의 구축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분석 및 연구를 위한 관련 法律專門家의 양성과 지원이 요구된다.

#### 4. 情報化社會에로의 進入을 위한 基盤擴充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情報產業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의 일상적 활용, 新技術에의 의존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의 생산·유통·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情報中心의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사회전반에 걸친 情報化의 필요성과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의 電算化와 이를 기반으로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범사업으로서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의 추진, 情報產業의 育成基盤의 확충, 情報化社會의 종합적 대책에 관한 국민적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國家社會情報化 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달성되면 21世紀의 우리 사회는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電算化·自動化·情報화가 실현되어 풍요로운 복지국가가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情報化社會를 지향한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법제가 보장하고 있는 權利義務關係의 현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情報化社會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法現狀을 그 고유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법질서 기본원리의 유지·보호·신장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법제의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21世紀의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른 정보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필요·최소한도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情報關聯立法의 지도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법제의 완비가 요구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情報化 자체의 대상영역이 광범위하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법률도 多岐化·細分化되어 있는 까닭으로 효율적인 국가사회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하였던 점을 바로 잡아서, 정보화의 올바른 수용과 사회적 基盤造成 그리고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통한 바람직한 情報化社會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 5. 產業社會의 高度化를 위한 制度改善

우리 시대상황의 다섯번째 특징으로 產業社會의 高度化를 들수 있다. 產業社會의 高度化는 우리 產業構造가 高度化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가 高度產業社會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과도기적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서 21世紀의 高度化된 產業社會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방향들을 열거해보면 產業體質의 改善, 科學技術의 保護 및 育成, 專門人力政策의 效率적 추진, 情報產業의 育成과 金融產業의 先進化, 中小企業의 役割調整과 保護 및 育成 등을 들 수 있다.

21世紀의 產業構造 高度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향과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수립된 정책의 법제화를 효율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學界, 業界 그리고 關聯部處의 協力的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21世紀의 고도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產業構造하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며, 동시에 입체적인 문제해결중심의 연구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法律專門家와 經濟專門家 그리고 기타 관련 전문가의 共同研究 그리고 각 관련 研究機關들의 共同研究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병행해서 한국의 최근 20년간의 주요 경제·사회지표를 통한 福祉水準의 발전추세를 볼 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선진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福祉國家化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全國民醫療保障制度의 실현, 國民年金制度의 확대실시 등을 통하여 社會保障制度의 조기도입·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福祉制度가 21世紀를 맞이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의 福祉關聯法制로는 한국이 21世紀에 高所得社會·高齡化社會로 변화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복지관련수요를 충족시키기 여려울 것이다. 예컨대, 21世紀의 한국사회는 產業構造의 高度화와 병행해서 국민 1인당 GNP도 2021년에는 약 25,000달러 이상이 되는 고소득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核家族化의 경향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여 2021년에는 人口成長이 적정수준에서 정지되며, 보건·의학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老齡人口가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게 되는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21世紀의 고소득사회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관련법제는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III. 21世紀를 향한 韓國法制의 座標

앞에서 살펴본 오늘의 時代狀況과 韓國法制의 現況 그리고 문제점들을 기초로 하여 21世紀를 전망해 볼때, 韓國法制가 21世紀를 향하여 지향하여야 할 座標로는 크게

- 民主法治國家完成을 위한 法制機能 強化
- 民族同質性 確保를 위한 統一法制 마련
-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法制整備
- 情報化社會의 定着을 위한 法制改善
- 高度產業社會를 先導할 法制改革

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국법제 좌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民主法治國家 完成을 위한 法制機能 強化

##### 가. 民主法治國家의 具現과 法의 役割 및 機能提高

21世紀에 있어서法制는 단순한 분쟁해결 및 질서유지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정

책수행의 기틀 형성, 국민의 가치판단 기준제공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국가정책의 대국민홍보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등 국가사회발전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하고 선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法制가 이러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때에만 民主法治國家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現行法制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總體的으로 診斷하여, 우리 법제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차원에서의 진단에 기초하여 현행 개별법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평가하여 21世紀 사회상에 적합치 않은 법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1世紀 民主法治國家의 구현을 위하여 법제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는 부단히 개선되어가지 아니하면 안된다. 시급한 입법정책을 뒷받침하고, 변화된 사회현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은 부단히 제정·개정되고 있다. 21世紀의 民主法治國家의 구현을 위하여 법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더라도 추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이 총체적 차원이 아닌 개별적 부처 또는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형평과 질서를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각종 법령안은 民主法治國家의 구현이라는 이념을 전제로 언제나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는 法令審議節次가 법령용어 및 조문체제의 통일 등 형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個別的法律의 具體的內容에 대한 검토에까지 미치는 實質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21世紀의 우리 사회는 南北統一與件의 성숙, 國際化, 情報화,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함께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법제가 이와 같은 사회상에 부합되고, 더 나아가 그 사회발전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현행법제의 총체적 유지 개선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未來社會에 豫測되는 立法需要와 立法政策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령의 개선, 입법수요의 개발 등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등 법령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각 계각층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의견이 법제속에 골고루 반영되어야만 그 법제는 국민에게 보다 설득력있는 법제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제가 국민에게 국가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그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立法意見調查 및 立法案에 대한 國民意見收斂體制를活性화하여야 할 것이다.

#### 나. 國民法感情과 현행법제의 조화 및 違法秩序의 確立을 위한 法制의 整備

「 내용적으로 훌륭한 법제」는 民主法治國家가 추진할 입법정책의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그 법제가 國民의 法感情과 일치하지 않아서 또는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법제가 아무리 내용적으로 훌륭하여도 결코 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法制度와 國民法感情 그리고 法現實과 國民法意識은 최대한 일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단군의 八條禁法에서 시원된 유구한 法的 傳統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공통분모를 가지는 법제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國民의 法感情의 뿌리는 결국 傳統法制 속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제가 國民法感情과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민족고유의 법적 정서를 발굴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傳統法制의 정리·편찬작업 및 법령연혁의 발굴작업을 부단히 진행하며, 역사속에 살아 움직이고, 현재 및 미래의 國民의식속에 전달되고 있는 法意識 및 法制度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제는 문서화된 「法典」속에서만 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각 조문의 내용 하나 하나가 구체화되어 국민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경우에 개별적인 法條文의 내용이 國民의 法意識과 유리되어 있거나, 國民생활의 준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할 때 그 영향력은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력을 잃기도 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게 마련이므로, 실정법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慣行 및 慣習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간다. 따라서 民主法治國家의 진정한 구현을 위하여는 國民法意識, 慣行 및 慣習法을 부단히 조사·연구하여 法現實과 法制度의一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이 국민생활 속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법조문의 개별적 내용을 국민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제에는 일제입법의 답습, 외국입법의 번역 등으로 예컨대 “瑕疵”·“懈怠”·“僭稱” 등과 같은 어려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 및 “善意”(모르고), “惡意”(알고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어와 다른 뜻을 가진 용어가 무수히 쓰이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조사연구차원으로 소규모로 행하고 있는 法令用語醇化作業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부·입법부·법원 기타 각종 법제연구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현행법제가 보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 국민생활과 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은 보다 널리,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현재, 官報·「순간법제」 등을 비롯하여 법제담당기관에서 발간하여 배포하는 각종 잡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法令弘報를 더욱活性화하며,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法令集을 통하여 現行法令의 신속·정확한 편찬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情報化社會가 우리에게 전개되면서 「圖書」의 형태로 전해지는 현행법령이 이제는 「電算網」의 형태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령 및 그 연혁, 판례, 각종 입법의견들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綜合的인 法令情報電算網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개선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現行法制에 대한 國民親和作業은 여러 각도에서 빠짐없이 지원됨으로써 국민이 법의 존재를 의식하고 준수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自治秩序의 確保와 건전한 地方自治文化의 定着을 위한 법제차원의 支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다. 21世紀에 있어서는 자치질서의 확보와 건전한 지방문화 정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의 보다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는 한국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치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에 부합하되 國家次元에서 統一性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韓國型 標準立法 및 條例가 부단히 개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법제가 지역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기본이념으로서 地域利己主義의 극복과 住民自治能力의 향상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입법정책의 바른 수행을 위하여는 국내외의 지방법제를 포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모범적인 지방법제를 제시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차원의 입법을 행할 때 관계 중앙법제를 신속·정확히 파악·전달하여 상호모순을 사전에 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제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民族同質性 確保를 위한 統一法制 마련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가 급속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과 변화는 우리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21世紀에는 統一民族大和合 차원의 統一文化가 창조될 것이다.

8·15해방 이후 남북한에는 사실상 궤를 달리하는 역사발전 및 변화과정이 전개되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에 들어선 남북은 정치·군사·외교적 측면에서 극단적인 대치 및 대립관계에 섰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統一文化를 형성하기 위한 統一政策 및 지원사업을 추진·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세계사 흐름의 획기적인 전환국면에서 제6공화국의 시의적절한 北方政策의 추진과 남북간의 대결자관계를 선의의 경쟁자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7·7특별선언」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여건을 성숙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족대화합의 차원에서 볼 때, 분단상황 및 비생산적 남북대립관계는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이 시대 제1의 당면과제이다.

동·서독이나 남북예멘 통합 및 통일방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측면의 統一政策 못지 않게 남북양측의 현실과 생활상을 담고 있는 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모든 현실과 가치관은 약간씩 상이한 양상을 띤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제에 대체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民族同質性回復을 위한 法制的側面의 研究와 政策의 開發은, 통일정책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즉, 北韓의 현법·형사관계법·민사관계법·토지관계법·노동관계법·보건사회관계법·경제관계법 등의 法規定과 그 現實的 運營實態가 과악될 경우 북한사회의 현주소는 좀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통일전후시기의 사회문화적 충격과 갈등의 완화 및 최소화를 위한 각 分野別 統一法制 마련과 향후 統一憲法의 制定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獨逸의 경우 동서통합 이전부터 西獨의 사전준비가 대단히 탄탄하였다고 하지만 통합 이후 법제의 재정비과정에서 동·서독 양진영의 사회문화의 이질적 요소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면 落胎行爲의 처벌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사회주의 법리의 조항을 채택, 落胎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낙태논쟁이 정치적 쟁점으로 까지 등장하게 되고 집권당(기민당)의 콜 首相이 憲法訴願提起를 천명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일을 대비한 법제차원의 事前努力이 소홀했기 때문에 초래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정과 지금의 노력을 살펴보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서는데, 北韓이 法典을 公開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統一政策 중의 하나로서 南北韓의 法典을 世界에 公開함으로써 平和統一政策의 또 다른 담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民族大法典(가칭)」編纂事業을 통하여 민족주체성 확보의 주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

에 민족적 에네르기를 집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양측이 성의있게 법전편찬에 임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수시로 추록하여 나아갈 경우 統一文化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해외동포의 남북한 방문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統一政策에 대한 法制的 측면의 支援은 크게 交流協力의 協商段階, 交流協力段階, 統一時代 前後段階 등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交流協力의 協商段階에서는 南北韓 法制를 비교·연구하고, 北韓의 法現實 및 法生活 연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交流協力段階에서는 南北交流 및 協力支援關係 法制整備와 北韓의 法現實 및 法生活 연구사업을 완료하고 비정치적 분야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統一以後 法制整備의 주도적 입지의 강화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統一時代 前後段階에서는 통일 전후시기의 사회문화적 충격과 갈등의 완화 및 최소화를 위한 각 분야별 統一法制 마련과 향후 統一憲法 制定에의 토대 마련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法制整備

#### 가. 新國際秩序下의 韓國法制整備

韓國位相이 높아짐에 따라서 UN과 IMF 및 ILO 등의 UN산하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실효성있는 國益 보호와 설득력있는 발언을 위하여는 관련문제에 관한 국제조약 및 외국법과 국내법 등의 검토와 분석 그리고 그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國際勞動機構(ILO)에의 가입에 따라서 노동관련 국내 법제를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國際通貨基金(IMF)에의 출자가 증가함에 따른 한국의 權利義務의 변화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로마조약과 유럽공동체 執行委員會가 제정한 각종 指針·規則 그리고 유럽공동체法院의 判決 등에 관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형성된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 대해서도 그 법적장치와 부수되는 법령정보를 신속히 입수·분석·정리하고 그에 관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활성화함

으로써 한국과 미국·캐나다·멕시코와의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럽 공동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經濟 블럭에 관한 법령정보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아시아 및 태평양 주변국의 政治·經濟·社會·協力體의 창설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21世紀의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법제의 國際化와 先進化는 외국법제와의 비교연구를 절대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법령 및 국제조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海外法律情報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법제의 국제화는 국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법제를 소개하고 한국법제의 논리와 그 타당성을 弘報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수적인 전제 사업으로서 大韓民國英文法令集의 編纂事業을 대폭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 나. 國際的 環境保護와 法制整備

본격적인 國際化時代를 맞이함에 있어서 탈이데올로기 및 경제블록화와 동시에 地球 전체의 環境保護도 절대적인 명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의 國際條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법제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조약에 따르기 위한 수동적인 법제정비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오존 층 파괴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이라거나 再生產業의 육성 등과 같은 環境保護技術과 環境保護產業의 育成을 위한 법제정비를 함으로써 국제적 환경보호의 압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의 국내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環境一通商 連繫法制의 마련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리우환경회의 등의 국제환경관련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통상 연계법제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기존의 “貿易 및 關稅에 관한 一般協定(GATT)”하에서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한국도 그러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물품 특히 有害化學物質의 輸入에 있어서 엄격한 登錄 및 申告義務를 부과함으로써 環境規制를 할 수 있도록 국내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그러한 주변국과의 환경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도 用器收去義務 등을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대해서 被害意識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법제

정비를 함으로써 21世紀의 한국의 國際化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 海外資源開發의 支援을 위한 法制 마련

국제적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21世紀에는 더욱 해외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의 적절한 법제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삼림과 수자원의 보호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해외자원의 개발에 장애가 되는 관련 외국의 각종 환경규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적대응을 취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해외자원개발의 한 방식으로서 21世紀에는 公海의 深海底, 南極 및 北極, 宇宙資源 등 國際共有資源의 先占 및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관한 유엔협약의 협상 및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대비한 국내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라. 市場開放과 法制整備

지금까지의 國內經濟關聯法制가 지난 40여년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와 해외시장의 개척의 견지에서 현재의 保護主義的이고 規制的인 法制가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발전에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保護主義의 극복 및 海外進出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우루과이협상과 같은 貿易및關稅에 관한一般協定(GATT)에 의한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GATT에 관한 연구와 관련 通商法制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와 관련하여 市場開放을, 국내 경제·사회·문화의 보호의 기회로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學界와 業界 그리고 關聯部處의 협력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해야 할 것이다.

流通市場의 開放에 관한 선진국의 압력도 있지만, 한국 자체로서도 유통업에 관한 효율적인 기술과 노우하우를 습득하고 流通業體 사이의 競爭促進으로 인한 원가 절감과 대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며 商品 및 서비스의 선택폭의 확대와 관련 유통서비스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도 있다. 유통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流通施設의 諸般 概念의 確立과 流通關聯施設들의 機能的 分化와 統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流通產業近代化促進法”, “都·小賣業振興法” 등 관련법제를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시

장의 개방과 동시에 단계적인 資本自由化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經營權을 보호하고 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法 · 會社法 · 獨占規制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에 관해서는 關稅로 인한 무역장벽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상이한 표준화로 인해서 각국의 工業規格 및 品質認證制度가 새로운 무역 및 기술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역관련 기술장벽을 우리나라의 輸入規制手段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기술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을 증대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역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協定과 국제기구의 標準規格을 고려하여 국내의 관련 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知的所有權關聯 商品의 교역에 있어서는 각국 국내의 知的所有權法에 의한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 및 통상분쟁의 중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지적소유권보호의 압력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의 첨단기술과 노우하우 그리고 디자인과 창작물 등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도 국내 知的所有權法(特許法 · 商標法 · 意匠法 · 著作權法 · 不正競爭防止法 · 實用新案法 등)과 對外貿易法 등의 계속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1世紀의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경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각국의 法制度가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21世紀의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다른 나라의 법제도보다 效率的이고 競爭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법제도이어야 할 것이다.

#### 4. 情報化社會의 定着을 위한 法制改善

##### 가. 情報產業育成을 위한 法制의 綜合調整

情報化社會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 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은 정보매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情報의 자유로운 生產流通을 위하여 情報關聯產業의 發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情報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정부는 情報機器產業 및 通信產業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정보기계 및 통신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情報機構 · 情報通信에 관한 기업간의 경쟁에 적절한 규제를 행하며 특히 資源集約的 高附加價值의 유망산업인 정보산업의 육성과 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통한 산업 및 각분야의 情報化促進, 정보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機能別·部門別 情報化事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관련법제의 체계적인 法技術的인 檢討가 필요하며, 나아가 21世紀의 정보산업에 수반되는 새로운 입법수요의 충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情報化社會로의 진전에 따라 情報產業分野의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공급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 확보방안, 또한 전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資質向上 및 權益保護를 위한 技術資格制度 등 관련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21世紀에는 국제간 情報通信秩序가 형성되어 情報·通信產業分野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국내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정비를 위한 法體系의 改善과 法制內容의 改編이 요구되고 있다.

#### 나. 情報化社會의 逆機能防止를 위한 法制次元의 整備

21世紀에 있어서는 情報化社會의 진전에 따라 사회생활의 각분야에서 컴퓨터 이용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수반한 컴퓨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산됨으로써 그 誤用 및 濫用에 따른 역기능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世紀의 高度情報化社會에 있어서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情報化社會가 가져올 역기능을 미리 진단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基準과 節次를 마련하는 한편, 國民生活 및 權益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21世紀의 高度情報化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화재·지진·수해 등의 자연적 재해, 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機具의 障碍, 불법행위에 의한 컴퓨터시스템의 파괴·도난 등의 人爲的 災害, 输入上의 錯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行政 및 立法措置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情報化社會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컴퓨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安全對策의 實效性을 담보하고 비용효과가 높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監查制度 및 컴퓨터범죄행위에 대한 民事的 救濟措置·情報化保險制度 등의 충실을 위한 政策의 전개와 그에 대한 法制的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世紀의 情報化社會가 가져올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보윤리 및 사회윤리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의 건전한 情報文化에 대한 인식을 提高하는 政策의 전개가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다. 高度情報化社會에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처

高度情報化社會의 전개에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토대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사태를 예시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情報化社會의 진전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의 발달과 보급에 의하여 정보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情報商品이 급격히 多樣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世紀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법률행위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契約의 締結方式, 당사자의 權利·義務 및 責任限界, 契約의 成立時期, 解除 및 損害賠償, 시스템 이용의 費用負擔 및 代金支給方法, 立證責任 및 證明方法 등에 관한 법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정보상품거래의 실제 해명과 契約去來面에서의 法的 地位를 부여하는 政府·學界·業界의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정보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消費者保護의 문제 및 국제적인 情報商品의 거래에 따른 紛爭解決의 原則과 基準設定 등을 위한 法制的인 측면에서의 分析과 解明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情報化社會의 발달은 우리의 產業構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라 勞動市場에서의 전체적인 고용구조도 변화될 것이며 勤勞條件에 있어서도 勤務形態의 多樣化에 따른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요구 등의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택근무제의 확대에 따른 勤務形態의 多樣化, 전자파 장애로 인한 각종 勞動安全衛生의 문제, 컴퓨터단말기의 확대보급에 따른 기업의 營業秘密의 保護問題, 전자노무관리에 따른 勤勞者의 人權 保障問題 등 企業組織 内部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法理論을 開發하고 관련 법 제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5. 高度產業社會를 先導할 法制改革

#### 가. 市場經濟秩序의 再編과 產業體質 改善을 위한 法制支援

21世紀의 高度產業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業界의 競爭과 創意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각종 規制를 철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企業의 設立과 活動에 관한 각종 行政節次와 規制를 완화함으로써 自由經濟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의 기업의 자유로운 進入 및 원활한 退出에 의해서 적극적인 產業構造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企業經營의 專門化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大企業內의 所有集中이 기업경영의 전문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대기업의 系列企業의 공개를 유도하고 累進的 相續稅와 贈與稅制를 강화하는 등 점진적이고 생산적인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를 대폭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이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소위 “假支給金制度”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시에 資產再評價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여 기업의 소위 “인플레자본소득”이 대주주에게 귀속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不實企業의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業整理節次를 간소화하고 기업정리에 따른 은행관리 및 법정관리제도 등을 보완하며, 企業合併·引受(M & A)市場을 活性化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商法·破產法·會社整理法 등의 관련 규정을 改正함으로써 기업정리와 기업합병·인수의 효율성 및 공정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市場의 공정한 競爭秩序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대기업이 가져다주는 “規模의 經濟”라고 하는 이익보다 市場支配의 지위의 濫用과 競爭의 制限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진다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 등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에 의한 이윤의 사회환원과 책임부담 등에 관한 법제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대기업의 이윤의 원천인 社會에 대한 責任을 具體化하고 관련 지역사회 속에서 共存公營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과 地域經濟의 活性化 그리고 21世紀를 향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실현하기 위해서 中小企業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21世紀의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이 맡아야 할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의 固有業種을 再調整하고 업종별 전문중소기업의 선정 및 금융과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 關聯法制를 再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部品生產 및 素材開發을 담당하고 대기업은 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산기술(computer technology)을 활용해서 中小企業의 生產性提高와 經營合理化를 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信用保險制度를 창설하는 法制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할부·융자·리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할부·융자·리스 등의 계약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소위 中小企業信用保險會社등을 창설하거나 그를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마련하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나. 科學技術의 保護 및 育成을 위한 法制改善

低賃金의 아세안국가들과 동구권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국내외시장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첨단 科學技術의 開發만이 제 2의 경제도약과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尖端技術產業을 育成하기 위해서 知的所有權法制를 整備하고 금융 및 조세혜택에 관한 제도를 체계화 및 효율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產業界·學界 그리고 研究所 등의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產·學·研 共同研究를 活性化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혜택에 관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知的所有權法制의 정비방안으로서 우선,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있어서 종업원들의 고안과 발명 가운데 우수한 것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상해주는 소위 “從業員發明保護法制”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기업내의 종업원에 의해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에 의해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의 보호와 商品化 및 企業化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고안 또는 발명 그 자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기초로 한 金融 및 稅制支援을 體系化하기 위한法制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知的所有權法制의 강화와 동시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은 知的所有權法制가 의도하는 과학기술의 보호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의 달성과 무관하거나 그에 방해가 되는 知的所有權 濫用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21世紀의 국제화된 시대에서는 국내외의 대기업들이 시장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대기업들에 의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적절히 규제 함으로써만, 본래의 法目的인 科學技術의 保護 및 育成 그리고 나아가서 產業과 經濟의 發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經營의 專門化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研究 開發과 專門經營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專門人力의 供給擴大를 위해서는 大學에 대한 企業의 財政支援을 적극 유도하여 소위 產·學·研 협동으로 產業人力을 養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른바 “社內技術大學(院)”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권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함

으로써 산업인력의 업계내 양성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체에 걸쳐서 自動化設備導入 등 인력절감노력에 대한 金融 및 稅制支援을 강화하고 租稅制度의 改善을 통해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의 제조업 인력의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科學技術의 保護·育成을 위한 研究開發(R & D) 投資比率 자체도 대폭적인 증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投資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金融 및 稅制의 再整備와 개발된 技術의 法的保護를 위한 知的所有權法制의 改革 그리고 관련 분야의 科學技術과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 다. 先進福祉社會에 대한 法制次元의 整備

한국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福祉關聯法制가 마련되어 왔지만 다가올 21世紀의 高度產業社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법제의 대폭적인 정비가 무엇보다고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1世紀에는 尖端科學技術의 비약적 발전이 각 분야에 응용되어 국민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GNP도 2020년에는 약 25,000달러 이상이 되는 高所得社會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21世紀에는 각종 社會保障制度가 完備되어 사회적 사고로 부터 보호받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健康管理와 保健教育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21世紀의 高福祉社會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國民經濟能力에 적합한 國民保健制度의 확충을 위한 未來指向的 법제를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1世紀에는 핵가족화의 정착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2021년에는 인구성장이 적정수준에서 정지되고, 보건·의학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게 되는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世紀에 본격화될 高齡化社會의 현상에 구체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高齡者對策 關聯法制의 體系的 整備와 補完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령자에 관한 정책 및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21世紀의 풍요롭고 안정된 국민생활이 기대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綜合的 社會保障·社會福祉政策의 확대실시에 따른 예측가능한 선진복지사회에서의 立法需要의 진단과 立法推進을 통한 사회의 衡平性 提高 및 건강한 사회의 확립을 위한 法制의 先導的 機能強化가 요청되고 있다.

## IV. 맷음 말

21世紀에 우리가 꿈꾸는 先進民主福祉國家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밀한 노력을 통하여 이룩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法制도 21世紀 한국의 基本秩序로서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韓國法制研究院에서는 앞서 언급한 21세기를 향한 法制政策課題를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法의 制定 · 改正時 法令體系의 統一性과 法的安定性의 確保를 위하여

- 現行法制의 體系的 診斷과 前向的 改善
- 新로운 立法需要와 立法政策 開發
- 法令案에 대한 國民意見收斂體制의 確立
- 實質的 法令審議機構 強化
- 國民法意識 · 慣行 및 慣習調查事業
- 傳統法制의 整理 · 編纂事業
- 現行法制에 대한 國民親和事業(法令用語淳化事業, 法令情報電算網構築, 大韓民國現行法令集 및 沿革集의 신속 · 정확한 編纂 · 普及)
- 韓國型 標準立法 및 條例 開發
- 法制教育院 設立 · 運營 등의 事業에 대한 育成 및 強化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둘째, 統一時代에 대비한 統一政策의 效率的 支援과 統一法制의 마련을 위하여

- 南北交流 및 協力支援關聯法制 整備方案 講究
- 北韓法制情報 및 研究實績 交換을 위한 有關機關의 協助體制 構築
- 北韓의 法現實 및 法生活 調查 · 研究
- 統一憲法 및 分野別 統一法制 마련
- 「한民族大法典」編纂事業

등의 事業의 早期達成을 위한 國家的 次元의 政策的 配慮와 支援이 요망된다.

세째, 新國際秩序에 부응하는 法制整備를 위하여

- 國제무대에서의 國際法的 對應戰略의 開發

- 外國法令 및 國際條約에 대한 신속한 情報提供體制 構築(海外法律情報센터設置·運營)
- 大韓民國英文法令集 編纂事業의 확대 등의 事業活性化를 위한 國家的 次元의 支援이 요청된다.

네째, 情報화 및 高度產業社會의 定着과 法制의 先導的 機能을 높이기 위하여

- 法令情報電算化事業體制 및 法律서비스體制의 擴充
- 情報產業 育成을 위한 法制의 綜合調整
-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法制와 經濟秩序의 有機的 運用의 強化
- 尖端科學技術의 開發을 위한 法制次元의 支援 強化
- 先進福祉社會에서의 立法需要의 診斷과 未來指向的 法制開發

등의 事業에 충실할 수 있도록 國家的 次元의 支援이 요망된다.